충청북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 시 가 스 공 급 규 정

20. 11. 23. 개정

충청에너지서비스(주) 참빛충북도시가스(주)

- 목 차 -

 .
 ,

 ,

1
1
]
1
1
]
<u>1</u>
 1
]
]

	제 5 장 요 금
	제18조 (요금)
	제19조 (가스요금 용도구분)
	제20조 (요금의 수납)
	제21조 (가스요금의 경감) —————
	제22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제23조 (10원단위 미만처리) —————
	제24조 (이의신청)
	제25조 (요금계산의 정정)
	제26조 (보증금)
	제 6 장 공 급
	제27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
	제28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
	제29조 (공급중지)
	제30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제 7 장 안 전
	제31조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32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제3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 8 장 기 타
	제34조 (문서보관)
	제35조 (사용장소의 출입)
	-3
부	칙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31
[별표 2] 시설분담금	- 31
[별표 3] 도시가스소비자요금표	- 33
[별표 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 35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36
[별지 제2호 서식] 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37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입통지서	38
[별지 제4호 서식]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39
[별지 제5호 서식] 가스사용 폐지 신청서	43
[별지 제6호 서식] 가스사용 중지 해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수요자분담 승인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검토 결과 통지서	49
[별지 제9호 서식]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도시가스공급규정

전문개정: 2005. 5. 1., 개정: 2005. 7. 5., 개정: 2007. 7. 23.,

개정 : 2007. 12. 1., 개정 : 2008. 1. 8., 개정 : 2008. 4. 30.,

개정 : 2008. 8. 7., 개정 : 2009. 1. 28., 개정 : 2009. 4. 14.,

개정: 2010. 5. 31., 개정: 2010. 11. 1., 개정: 2011. 12. 29.

개정: 2012. 7. 1., 개정: 2013. 8.27., 개정: 2014.12.30.

개정: 2015. 12. 15., 개정: 2016. 12. 27., 개정: 2017. 11. 06.

개정: 2018. 7. 10., 개정: 2019. 7. 18. 개정: 2020. 11. 23.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의 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 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에 관한 보고·점검실시·기록 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 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0. 11. 23.)
- 제3조 (적 용) 이 규정은 회사와 충청북도지사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 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kPa(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m³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 2.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 3.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 4.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 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합니다.
 -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 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 7.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 8.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개발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 13.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 14.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 18. "시설분담금" 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 가. "일반시설분담금" 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 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 금을 말합니다.
 -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 19. 인입배관공사비분담금은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 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 장치의 공사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분담금을 말합니다.
- 20. "듀얼연료설비"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 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
- 21. "연료대체"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합니다)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②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등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가스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고시 제 2011-319호에 의거하여 산정된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 또는 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 도시가스 공급계약(재계약 포함)시 가스의 수급 및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택용 이외의 수요자가 월 사용예정량이 10만㎡이상 또는 도시가스 외 타 연료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월별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합니다.)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시에는 사용계약 가능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개정 2020. 11. 23.)
-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개정 2020. 11. 23.)
- 2.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 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6.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 7. 인근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가스압력에 현격한 영향을 끼쳐 가스공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제8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4.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주택용 등)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 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 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

하여 최대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 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및 사용료의 5배
- 2. 봉인파손사용: 사용료의 3배
- 3.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 사용료의 5배
-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 5. 계량기 무단이설 : 사용료의 3배
- 6. 부정시공사용 : 사용료의 5배
-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 단, 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 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9]에 따른 통지
-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 제9조 (해 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5일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단 행정관청 인허가 처리로 인한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 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 ③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 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중지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요금 납부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 ⑥ 제8조 1항 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합니다.
- 제10조 (계약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 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가스공급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승낙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 2020. 11. 23.)
 -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신설 2020. 11. 23.)
 - ③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 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소기 제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 제13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 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③ 가스계량기 및 압력온도 보정장치는 관련 법률 및 특례기준에 의거 승인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0. 11. 23.)
 - ④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정유효기간 도래 주택용(10등급 미만)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그 밖의 계량기의 교체에 대해서는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단, 성능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성능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주택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다기능계량기, 통합검침시스템등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시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 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7 10등급이상 계량기와 <mark>주택용</mark>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고, 회사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환금금액에서 유지관리비는 제외합니다. (개정 2020. 11. 23.)

- 제13조의2 (온압보정장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1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정장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당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수요자 토지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고 관리합니다.
 - ③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의 부담으로합니다.
 - 1.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50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 미만인 지역 은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 2.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 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며,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3.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고자 요청하거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용이 난해한 산업체, 농공·공업·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지형이 특수한 지역(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원거리 지역 등에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공사비를 별지제7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해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 ⑤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철거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 및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4)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에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회사가 부담합니다.
-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2참이 가소 세데스는 제다 고구시켜기여이 시청세데스기 이나 자계
- ⑧ 제3항의 최소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3년간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하여산정합니다.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 제15조 (검 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취사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수요자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②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검 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스계량기에 대한 직접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가스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 5. 제2항에서 실시한 자가검침의 확인이 필요할 때
- 6. 원격검침설비의 확인이 필요할 때
-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기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 계량기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계량기와 원격검침 지시부와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합니다. (신설 2020, 11, 23.)
- 제16조 (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m³)로 하며 검침 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 제17조 (사용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다만 제2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용자 중 별도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침량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는 온압보정계수를 곱하여 해당월분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사용량 = 검침량 × 온압보정계수

- 단, 사용량은 소숫점 넷째자리이하 절사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사용량(Nm³)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월간 가중평균열량(MJ/Nm³)을 곱하여 사용량(MJ)을 산정합니다.
-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 간의 월평균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⑤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든가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V =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³)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또는 mmAq)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단, 상기 보정산식의 보정계수는 소숫점 일곱자리에서 절사합니다.

- 제17조의2 (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 산정) ① 제13조의2에 따라 온 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 월분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가 사전 통지 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의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제 5 장 요 금

- 제18조 (요 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며, 요금은 별표 3의 도시가스소비자요금표를 적용합니다.
 -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 연동하여 시행하며,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 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 및 일평균기온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제19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의 구분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전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용, 산업용, 냉난방공조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연료전지용으로분류하고 용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 ①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해 구분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1. 취사전용 요금은 난방은 타 연료를 사용하면서 취사로만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2. 개별난방 요금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개별난방 및 취사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3. 중앙난방 요금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중앙집중식난방 및 취사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②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 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③ 일반용 요금은 주택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연료전지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④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은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냉난방공조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 ⑤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동일장소 내 부대시설은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하게 산업용 요금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라 함은 구내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경비실, 사무실,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사택은 제1항 제1호, 제2호 중 해당되는 용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 ⑥ 열병합용 1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며, 공동주택, 업무용건물, 산업용 등 자가용 열병합 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 합니다. 다만, 열병합용 2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하고 열병합발전용 설비와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전용설비용을 적용합니다.
- ⑦ 열병합용 2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열병합용 1을 적용합니다.
- ⑧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단, 공동주택에서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가스는 주택용(중앙난방) 요금을 적용합니다.
- ⑨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천연가스충전소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⑩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에서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 제20조 (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3의 도시가스소비자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시가스요금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전자고지(애플리케이션, 문자,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종이고지서를

-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개정 2020. 11. 23.)
- ③ 회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서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개정 2020. 11. 23.)
- ⑤ 회사는 사용기간이 월중 15일 미만일 때에는 별표3의 기본요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고, 검침에 의한 실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며, 월중 15일 이상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⑦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가스요금의 경감) 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 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 ②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 ③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의 납기일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2회 이

- 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도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스사용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 기한 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기존의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일반용 요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⑥ 도지사는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합니다.
- 제23조 (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 제24조 (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5%를 적용합니다.
- ⑤ 가스누출 원인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는 누출량을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누출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누출된 월의 요금은 전년 동월사용량, 전월사용량 순으로 비교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월 사용 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을 적용하여 초과된 요금을 감면합니다. (신설 2020. 11. 23.)
- 제25조 (요금계산의 정정) ① 회사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 량기 검사결과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동월 사용료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사용량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 ② 가스사용시설의 시공착오 등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 등의 과실로 인하여 가스사용량에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쌍방간 또는 시공자와 가스사용자간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 제26조 (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 3개월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 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또는 근저당 설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 월 예정사용량이 42,470MJ(1,000m³)/월 이상인 가스사용자
 -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 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 5. 가스사용자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및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 6. 제3항에 의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연체한 경우
- 7. 가스보일러의 시험가동 및 동파방지를 위한 임시가스사용자
-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6호가목(월 사용예정량 산정기준)
- 을 준용하여 산정한 월 사용예정량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 ④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회사가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의한 독촉안내를 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 ⑤ 회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합니다.
-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호의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단, 가스사용자의 요청으로 보증금 반환시 이자를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한국은행이 작성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율
-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 은행 보통예금의 평균이율

제 6 장 공 급

- 제27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열량 : 41.02 ~ 44.37MJ/Nm³ (9,800 ~ 10,600kcal/Nm³)

환산기준: 1cal = 4.1868J 적용(동 규정내 동일기준 적용)

다만, 상기 열량 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접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 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 열량의 ±2% 이내이어야 합니 다.

-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 3. 압력(주택용):

최고압력 ····· 2,451.7Pa(250mmAg)

최저압력 ····· 980.7Pa(100mmAg)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호(2020.2.3.)에 따릅니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따릅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 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제28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 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 6.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9조 (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4,5,7,8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보증금,가스계량기교체비용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의한 독촉 안내 및 공급중지예고 안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 4.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한 때
 -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②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고,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만기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 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배관절단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30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설분담금은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7 장 안 전

제31조(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

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0. 11. 23.)

- ② 회사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 소유를 포함한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집니다. (신설 2020, 11, 23.)
- ③ 회사는 가스사용 신청, 가스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신설 2020. 11. 23.)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20. 11. 23.)
 - 1.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⑤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설 2020. 11. 23.)
- 제32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 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 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

- 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⑥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에 의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안전점검 이행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⑦ 가스사용자가 완성검사 후 20일을 초과하여 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회사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도지 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8 장 기 타

- 제34조 (문서보관)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합니다.
 -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열람 등)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35조 (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검침·점검·조사·체납관리, 비상상황발생·응급조치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사원증) 또는 신분증명서(신분증)를 제시해야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적용의 예외)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경과규정) ① 공급연료가 LPG+Air의 경우에는 공급규정 제21조 제2항의 국민생활기초보상수급세대 사용량요금 감면량 "8m³이하"를 "6m³이하"로 적용합니다.
 - ② 공급연료가 LPG+Air의 경우에는 공급규정 제27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제1항의 열량은 표준열량 62.8 MJoule/m3(15,000 Kcal/m3), 최저 열량 60.7 MJoule/m3(14,500 Kcal/m3)로, 연소성은 최고 웨버지수 13,506, 최저 웨버지수 12,506로, 성분은 1㎡당 LPG 0.625, AIR 0.375로, 압력(주택용)은 최고압력 2,452Pa(250mmAq), 최저압력 980Pa(100 mmAq)을 적용합니다.
 -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받은 도시가스소비자 요금은 이 규정 제18 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의 예외) 제8조 제2항의 가산금 일할계산과 별표 6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 사회복지시설 제11항의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5월 사용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열량은 2015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열량 : 41.02~44.37MJ/Nm³ (9,800~10,600kcal/Nm³)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8조 제2항은 시스템 구축 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부칙에서 적용하던 열량 기준은 제27조제1항제1호의 열량을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의 예외)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관련조항: 제5조 제2항)

구	분	1 등급	1.6 등급	2 등급	2.5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7 등급	10 등급	16 등급	25 등급	40 등급
五七二	용량 ır)	1	1.6	2	2.5	3	4	5	6	7	10	16	25	40

- ※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0㎡이하인 경우 설치된 해당등급 계량기로 산정하고, 41㎡이 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 ※ 표준소비량(m³/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7MJ/Nm³(10,144kcd/Nm³)로 합니다.
- 1) 주택용 수요가

·취사전용 수요가 : 2.5 m³/hr 이하

- ·취사, 난방 겸용 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구의 총 1시간 당 표준가스소비량
- 2) 주택용 외의 수요가: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총 표준가스소비량. 다만, 보일러가 시간당 증기발생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의 표준가스소비량은 1톤의 열량을 2,635.983MJ/hr(63만㎞/hr)로 하고 1시간당 가스소비량은 기준열량(42.47MJ/N㎡) 으로 나누어 확산합니다.

[별표 2]

시 설 분 담 금

(관련조항 : 제6조 제2항)

- 1. 일반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전체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
 - 나. 기준단가 : 25,339(원/m³) (단위당 표준가스소비량 기준)
 - 다. 금 액: 기준단가(원/m³)×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m³/hr)
 - 40m³/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별표 2]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 소비량에 따라 적용합니다.

[참조] 시설분담금(신규계량기)

(단위:원, 부가세 별도)

등 급	2.5	4	6	10	16	25	40
모 델	G-1.6	G-2.5	G-4	G-6	G-10	G-16	G-25
분담금	63,348	101,356	152,034	253,390	405,424	633,475	1,013,560

-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 나. 부담액 산정식 : 기준단가(원/m³)×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m³/hr)
 - 다. 기준단가 : 196,569원/등급

-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가. 납부대상 : 100m 당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50세대 미만인 가스 사용자
- 나. 금 액: 기준단가(원/m³)×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m³/h)
- 다. 기준단가(워/m³):

[(표준투자비×배관연장거리×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325,121원/m, 적용률은 70.95%로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회수액은 1항에 따른 총 가스사용자의 일반시설분담금을 적용하며,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은 359,961원/세대를 적용합니다.
- 라. 도로와 병행한 배관과 인입배관이 동시에 매설되는 때에는 인입배관을 포함하여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4.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충청북도 고시 제2011-319 호에 따릅니다.
- 5. 상기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고지합니다.

[참조]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단위:원,부가세 별도)

세대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금액	22,604,533	11,071,608	7,227,300	5,305,146	4,151,853	3,382,991	2,833,804	2,421,914	2,101,555	1,845,268
세대수	11세대	12세대	13세대	14세대	15세대	16세대	17세대	18세대	19세대	20세대
금액	1,635,578	1,460,837	1,312,979	1,186,244	1,076,406	980,299	895,498	820,119	752,675	691,976
세대수	21세대	22세대	23세대	24세대	25세대	26세대	27세대	28세대	29세대	30세대
금액	637,057	587,131	541,546	499,760	461,317	425,831	392,974	362,463	334,057	307,545
세대수	31세대	32세대	33세대	34세대	35세대	36세대	37세대	38세대	39세대	40세대
금액	282,743	259,491	237,648	217,090	197,707	179,401	162,084	145,679	130,115	115,329
세대수	41세대	42세대	43세대	44세대	45세대	46세대	47세대	48세대	49세대	
금액	101,265	87,870	75,098	62,907	51,257	40,115	29,446	19,222	9,415	

- 세대수 : 동시에 가스공급을 신청한 세대수

- 금 액: 100m 당 4등급기준 1세대별 분담금액

- 가정난방용 이외시설의 경우 계량기 등급은 표준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

[별표 3]

도시가스 소비자요금표

(관련조항: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①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표

	_	소나	비자 요금	-
구	분	기본요금 (원/세대)	사용량 요금 (원/MJ)	비고
	취사전용	950원	도매요금+공급비용	
주 택 용	개별난방	950원	도매요금+공급비용	
	중앙난방	950원	도매요금+공급비용	
업무	난방용		도매요금+공급비용	
	동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일반용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냉난방	동 절 기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공급비용	
공조용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동 절 기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산업용			도매요금+공급비용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열병합용	동 절 기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하절기		도매요금+공급비용	
1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열병합용	동 절 기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도매요금+공급비용	
2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 설비용		도매요금+공급비용	
수	송 용		도매요금+공급비용	
연 료	전 지 용		도매요금+공급비용	

- 주) 1.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공급비용, 부가세 별도
 - 2.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도매사업자 요금 적용 [원료비 + 도매비용(한국가스공사)]
 - 3. 공급비용은 도지사가 승인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 적용
 - 4. 계절구분 : 동절기 1~3월, 12월 / 하절기 6~9월 / 기타 월 4~5월, 10~11월 적용
 - * 냉난방공조용 : 동절기 1~3월, 12월 / 하절기 5~9월 / 기타 월 4, 10~11월 적용

② 참빛충북도시가스(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표

		소기	비자 요금	
구	七	기본요금 (원/세대)	비고	
	취사전용	950원	도매요금+공급비용	
주 택 용	개별난방	950원	도매요금+공급비용	
	중앙난방	950원	도매요금+공급비용	
업무	난방용		도매요금+공급비용	
	동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일반용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าปา โหโ	동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냉난방 고고 9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공조용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ત્રી બે ઉ	동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산업용 1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1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ત્રો ભે છ	동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산업용 2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어버킹 0	동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열병합용	하 절 기		도매요금+공급비용	
1	기 타 월		도매요금+공급비용	
	- 설비용		도매요금+공급비용	
연 료	전 지 용		도매요금+공급비용	

주) 1. 부가세 별도

- 2.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도매사업자 요금 적용 [원료비 + 도매비용(한국가스공사)]
- 3. 공급비용은 도지사가 승인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 적용
- 4. 계절구분 : 동절기 1~3월, 12월 / 하절기 6~9월 / 기타 월 4~5월, 10~11월 적용 * 냉난방공조용 : 동절기 1~3월, 12월 / 하절기 5~9월 / 기타 월 4, 10~11월 적용
- 5. 산업용은 월사용량 1,250만MJ을 기준으로 미만 사용 시 산업용1 요금을, 이상사용 시 산업용 2 요금을 적용

[별표 4]

가 스 계 량 기 교 체 비 용 (관련조항 : 제13조 제3항)

(단위 : 원)

구분	10등급	16등급	25등급	40등급		40등급 2	초과	刊	고
금액	1,860	2,870	2,920	4,940	설치	계량기별	별도계상	부가서	네 별도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신청정보					
고 객 유 형	□ 개인 □ 사업자(개인) □ 법인 □ 공공기관 □ 외국인				
사 용 용 도	□ <mark>주택용</mark> □ 영업용 □ 산업용 □ 기타 ()				
소 재 지					
가 구 수					
면 적					
	•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년월일				
*주소	E-mail				
*연락처	(전화) (휴대폰)				
* 부문은 고객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u>(서명, 인)</u>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신청정보						
신 청 구 분	□ 신규 □ 전입 □ 명의변경 □ 자동이체 □ 기타 ()					
고 객 유 형	□ 개인 □ 사업자(개인) □ 법인 □ 공공기관 □ 외국인					
사 용 용 도	□ <mark>주택용</mark> □ 영업용 □ 산업용 □ 기타 ()					
설치장소번호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 년 월 일					
*주 소	E - m a i l					
*연락처	(전화) (휴대폰)					
*요금청구방법	□ 문자 □ E-mail □ 고지서					
	<u> </u>					
자동이체신청						
거 래 은 행 명	은행 *예금주명 (서명,인)					
계 좌 번 호						
*부문은 고객 필수 기	재 사항입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서명, 인)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입통지서 (관련조항 : 제6조,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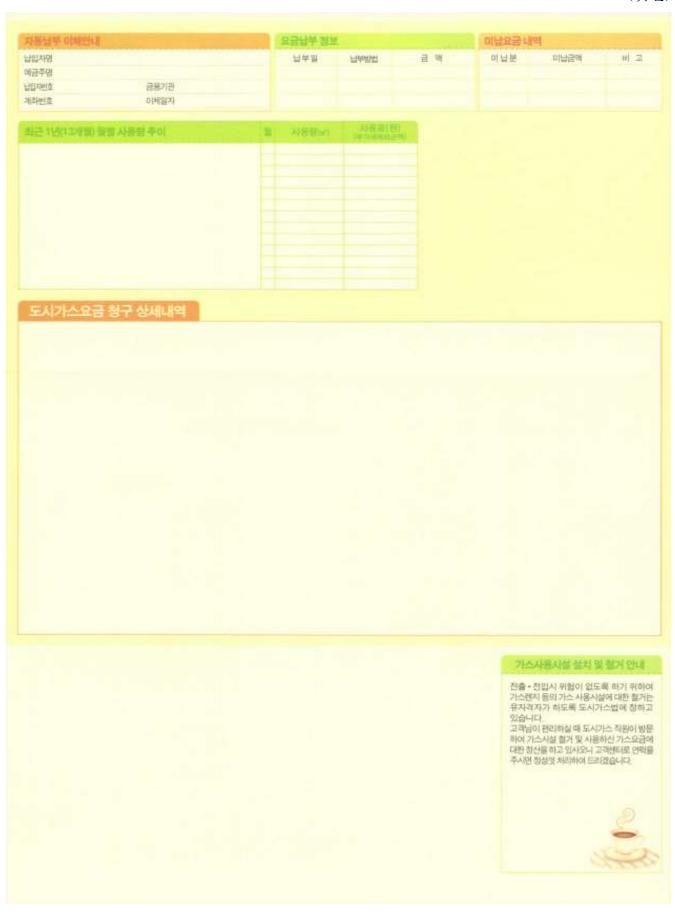


[별지 제4호 서식]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관련조항 : 제18조)

(앞면)







← IOS용

도시가스 요금 청	구내역 () 년	월 청구	분 금액	((1+2)		원
사용주소						고객전용기	
고객번호	고 객 명					(예금주: 참빛충 학 하나	북도시가스)
검침근거	사용기간		납부마감일			*b 국민	
당월사용내역	①당월요금	금내역		미납요금	내역	NH 농협	
계 량 기 번 호	사 용 료	원	미납개월수	С	미 납 금 액	도시가스공급중	지예고(최고장)
용 도 (MJ)	기 본 요 금	원					
당 월 지 침 ㎡	계량기교체비	원	자 등	등이체인	출 내 역		
전 월 지 침 m²	감 면 금 액	원	인 출 일	청구금액	인 출 금 액	고 객 안 미	내 사 항
사 용 량 m ²	부 가 세	원					
보 정 계 수	계	원	7	전자세금계	l산서		
보 정 량 ㎡	전 월 연 체 료	원	공급자등록번호		급 자 참빛충북도시가스(주)		
평 균 열 량 M.	정 산 금 액	원	공급받는자등록번호		급가액		
총 사용 열 량 M.	절 사 금 액	워					
전 월사 용량 ㎡	수 납 금 액	원	작 성 일 자		가 세		
전년동월사용량 ㎡	합 계	원			하여 충주세무서장에게 신고등록한 금계산서 발행 확인용입니다.)		
						'	
OCR 🌎 지로영 *	수증 금융결제원승인		6) _ ^X	로통지	 서 (금융기관용) 전자납부가	느
(고 객	제 35534 호				,	/ [[]]	<u> </u>
지로번호 40023		지로번호	1000	263	금 액		원
^{人生哲文} 4 U U Z 3 U	OUR OUR	시도번호	4002	303	급 액		전
금액	원 기로	반호	고 객 조	회 번	± c =	를 액 C	Code
고객번호							
고 객 명		(동진) 이 종이는 컴칙	퓨터로 처리되므로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루 주의하여주십시오.	
				전	자납부번호		
사용주소				월	사용량(m³) 사 용 5	료 (원) 월 사용량(m³)	사 용 료 (원)
납부마감일							
/							
	H 회사 (WILLIAM TO A STATE OF THE STATE		IIII on and		부가세 및 기	본요금 제외금액
참 보충북도시가스주	1일사 🛡	※납무장소 : 인터넷지 전은행, 5 사공자추	로(www.giro.or.kr), 인터넷! 동협, 수협,우체국, 새마음;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금;	병칭, CD/ATM, 금고, 신용협동조합, 윤투자회사(증권사)		도시가스주식호	 사
k	L				고객상담은	국번없이 ☎ 1899-9100 → 충주3번	

※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을 사칭하여 난방배관 혹은 렌지후드 점검 후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은행 납부시 점선을 따라 절취 후 납부하여 주십시오 🐧

OCR 👀 년 **청구분 도시가스요금** 지로영수증(고객용) 월 고객전용 객 번 호 가상계좌 지 로 번 호 3 4 0 0 2 3 6 미 납 요 금 은 청 구 금 액 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 금 액 원 미납요금 개월분 원 월 일 일까지 기 년 세대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확인 계량기번호 적용용도 사업자번호 사 용 월 녀 월 사용분 요금단가 이 메일발송 사용금액 사용량 사 용 료 원 당월지침 기본요금 워 전월지침 m³ 교체비용 원 __ ._ 사 용 량 m³ 편 리 한 자 동 이 체 (은 행)신 청 하 세 요 감면금액 원 보정계수 소 : 부 가 세 원 보 정 량 m³ 계 원 성 명 : 상 호: 전 월 사 용 량 m³ 전 월 연 체 료 원 우편번호 : 전 년 사 용 량 m³ 정산금액 원

발행일자 :

원

고지근거

합

계

※ 고지근거가 인정고지인 세대는 납기일이전에 당사로 정확한 제량기 지침을 통보하시어 수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격계량기를 사용하시는 세대는 옥내계량기와 목의 원격지시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옥내계량기를 기준으로 요금부과 되오니 목의 원격지시부와 옥내계량기를 확인하시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당사 혹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일 경과시 연 24%의 연체료가 일할계산되어 추가 고지됩니다. ※ 도시가스계량기 무단조작 및 임의변경(5배위약금) 사용시 형사(형법,도시가스사업법) 고발조치됩니다.

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확인은 청(www.esero.go.kr) 또는 당사 세금계산서 홈페이 (wjgas.taxbill365.com)에서 출력 (단,당사에 사업자등록 신고 고

(단, 당사에 사업자등록 신고 고 한함) ②세금계산서 발급마감은 의월 까지이며, 이후 세금계산서 변경 발행이 불가합니다.

질 3 가스미사용, 사용자 변경시 당· 통보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취소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지서는 부가세신고 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차상위계층, 사회적배려자, 회복지시설 요금할인 접수요!

※ 인터넷 지로 납부가능 (www.giro.or.kr)- 뒷 면 참 조

참빛충북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번호 853-2451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합니다. ※ 법기일이 경과되어도 본고지서로 납부합실수 있습니다. 수 남

[별지 제5호 서식]

가스사용 폐지 신청서								
주 소								
신청인					연	락처		
사 유					<u>s</u>	청일	20 .	00. 00.
1. 공급규정 제9조(해약), 제1항, 제14조(공사비) 제5항, 제29조(공급중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 변경(공급배관마감) 공사비는 원인행위자인 신청인 본인이 전부 부담할 것이며, 안전관리(공급배관 단지 외 마감을 기준함)를 위하여 귀사와 적극 협의하여 공사(건물철거 등)를 진행 할 것입니다.								
2. 공사비 현황 구 분			공급가액		E	- - - - - - -	총	flo
마감공사	1)		6日/1円		<u> </u>	<u> </u>	0	
※ 상기 공사금	액에 대	한 안	내를 받았으	.며 호	라인하였습	니다.	(자필서명)	
3. 수집 개인정				·	기비원 스 Al /	^ 페 키버 기 케	기 크리카 제되다	ک ماکیاتا
・개인정보 처리동의구 분목 집	वे व	· 개인성 항 목 성명,	모저리에 내한 경	-의를 /	1구알 수 있으 보유기			학인
수집· 가스시 이용 폐지차	-용 건물 리 전 ⁵	8 78, 명/상호, 화번호, 주소	신청일~ 폐지 완료일		가스 공급관련 배관 철거일	년 분쟁을 대비하. 후 5년	기 □ 동의	(인/서명)
※ 회사는 개인정보보3 등록번호) 등을 별5							·] 발행을 위하여 고	유식별정보(주민
			년		월 일			
						신청인		(인)
0000000 주식회사 대표자 귀하								
※ 첨부서류 :	위치도	1부						
	날 ?	짜-	기존 등 급	계량:	기 개 수	담당자	서 명	비고
0000팀								

		가스사용 중지	해제	신청서	
신	수용가번호		전 화	번 호	
청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인	주 소				
가스	: 중지 사유			중 지 기 간	일간
해 :	제 요 청 일	년	월	일	시경
계	량 기 번 호			계량기지침	m³

공급규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용 중지 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대표자 귀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가스 공급과 사용을 위해서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체결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도시가스 사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상세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www.xxxx.co.kr) 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게시 합니다.

구 분	수집항목	이용목적
개인정보 처리동의	고객명(상호), 주소, 생년월 일(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도시가스 사용량, 사용요금, 연체기록, 결제기 록, 보증금 관련 정보	·도시가스 사용/공급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변경 및 해지 ·사용량 검침, 요금 청구/수납/추심 ·본인확인 및 고객 식별키 발급 ·고객 요구사항 처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경감 및 혜택 제공 ·고객과의 의사전달 경로 ·경품추첨 및 배송을 위한 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이상의 내용으로 도시가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독의한

		그 6 기 이 기 당 급

구 분	제공 받는자	제공항목	이용목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나이스 평가정보(주)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본인확인(Safe-jey) 발급 ·체납 시 채무불이행 등재

※ 보유기간 : 이용목적 만료 시까지

본인확인(Safe-key)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나이스평가정보(주)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채무불이행 등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나이스평가정보(주)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도이됬기 아스

신청인 (인)

[별지 제7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수요자분담 승인신청서									
신	상		호							
청	대표	자	성명					전호	화 번 호	
인	주		소							
구	사	개	였	관	경 :		mm,	연	장 :	m
0		/ II 	717-	공사	기간 :	년	월	~ 년	Ç	
공	사	금	애					수요가		
0	, ·I	Ц	٦					분담액		
주	변 7	가 구	- 수							
가스	:사용(신청기	구수							
분	담	조	건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를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수요자가 분담하는 조건으로 공사하고자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수요자 분담 동의 및 명단 1부.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수요자분담 동의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를 아래와 같은 분담할 것과 추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 동 의 구 간 :
- 공 사 기 간 :
- 가스사용 신청 가구수 : 외 가구
- 수요자 분담액:
- 수요자 대표
- 기타사항
 - 공사 준공금액과 수요자 분담액 차이 발생 시 분담금의 일부를 환불 또는 추가납부가 가능함.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자 귀하

번 호	성 명	주	소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신청인은 하기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OOOO주식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라 고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 등에 동의합니다.

- ※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신청서의 서비스업무를 위하여만 사용되며, 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행위는 없음을 보증합니다.
- ※ 신청인은 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뒤	분	수집항목	이용목적
개인경	성보	성명/전화번호/사용세대수/주소	본인확인/공사위치 및 사용세대수 확인 민·형사상법적조치

※ 이용기간 : 신청일 ~ 공사 마감일

※ 보유기간 : 공사비 잔액정산 및 법적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공사 마감후 5년간.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٦	년	월	일
신청	인			(인)

[별지 제8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검토 결과 통지서										
1. 고객 현황										
	상호(명칭)		전화 번호							
신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거주지 주소									
인		(구주소)								
	공급지 주소	(신주소)								
2. 도시가스 공급검토 결과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 (사용계약시기, 계약조건 등)										
도시가스 공급 불가 사유										
신청인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년 5	릴 일						
0000주식회사 대표자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9. 7. 16.)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① 업체명			② 사업자번호							
③ 소재지	본 사:									
⑤ 소세시	사업장 :									
④ 관리자	부 서	성 명		연 락 처						
७ ६९/१			(전 화) (e-mail)	(휴대	폰)					
⑤ 통지구분	□ 설 치 □ 변 경 □ 폐 쇄 ⑥ 설치(변경)일자									
⑦ 설치(변경) 내 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제4항 1호에 따라, 듀얼연료 설비 설치(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힏			
			신고역	인(대표)	0 0	0 0	(인)			
			00	도시기	·스 대표	포이사	귀하			